

서대문구의정비심의회 회의록 (1차)

2024. 2. 6.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서대문구의정비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 ◆ 일 시 : 2024. 2. 6.(화) 14:00
- ◆ 장 소 :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 ◆ 참석위원 (총 9명 중 8명 참석) ※ 성명 가나다 순
 - 김도형, 김주원, 오학우, 이소연, 이종훈, 조충길, 지용사(위원장), 홍순표
- ※ 배석 : 대외협력팀장, 주무관(2명)
- ◆ 상정안건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기준금액) 결정
 -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
- ◆ 회의결과
 - 2024~2026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기준금액)
→ 150만원 의결
 - 주민의견 수렴방법 → 공청회 의결

제1차 서대문구 의정비심의회 개최

〈대외협력팀장〉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진행 순서는 위원 소개, 인사 말씀, 위원장 선출, 위원 선서, 안전 상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성현 구청장님께서 명절 행사 등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 위원 위촉장 수여식은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소개 종료 〉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선출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인사말씀 종료 〉

□ **위원장 선출**

〈대외협력팀장〉

- 다음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진행을 맡아주실 임시위원장으로 2022년 의정비 심의회 경험이 있으시며 주민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000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000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겠습니다.
- 000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임시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000입니다.
-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그러면 논의 사항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자료 3쪽을 보시면 위원님들의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위원장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 공청회로 결정될 시 공청회 주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천자에 대하여 거수 표결로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속기를 위해 의견을 개진하실 때에는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0 위원〉

- 000 입니다. 000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하고 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 운영에 밝으신 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000님을 추천합니다.

〈000 임시위원장〉

- 네 000님 추천 있습니다.

〈000 위원〉

- 저는 지금 임시로 진행하고 계시는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000 임시위원장〉

- 제가 추천을 할 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 그러면 000 위원님께서 000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 혹시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000 위원, 000 위원 후보자 추천이 있어 거수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000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다음 000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러면 6(여섯) 분이 000 위원을 추천하셨고 2(두) 분이 000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 거수 결과 000 위원이 서대문구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제가 끝내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을 소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선서

〈000 위원장〉

- 지금부터 제가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회 위원장으로서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먼저 의정비심의회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나뉘드린 선서문을 보시고 제가 선서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 제가 선서를 시작하면 위원님들께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마지막 장에 각자의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선서 종료 〉

□ 회의 공개/비공개

<OOO 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 3쪽을 보시면 됩니다. 회의는 외부인 참관이 가능한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2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 다만 회의가 비공개로 되더라도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면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를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나요?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팀장>

- 공개가 원칙인데 공개가 되면 참관인들이 와서 이제 참관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자료 같은 속기록이나 회의록은 다 어쨌든 홈페이지에 다 공개는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여기서 발언하신 말씀은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참관인들이 참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OOO 위원>

- 그럼 참관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대외협력팀장>

- 주민들이 많이 관심 있는 주민이나 이렇게 의회 의정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참관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장〉

- 참고로 2022년 의정비 심의할 때도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명단과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게재를 했습니다.
- 다시 한 번 그러면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분이 찬성하셨으면 3분의 2를 통과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기준금액)

〈000 위원장〉

- 다음은 안건 제1항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대외협력팀장께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입니다.
- 금일 논의하시게 될 의정활동비란 무엇이고, 의정비 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의정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1쪽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그리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액을 의정비라고 하고 다시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 정례회, 임시회 등 회기에 따른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여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 올해는 지방선거가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회의 자료 1쪽 하단 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범위와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제2차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범위를 의정비 심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즉 서대문구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 그러면 의회에서 통보받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바뀐 금액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회의 자료 2쪽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위원장 선출과 회의 공개 여부는 심의회 초반 이미 논의된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회의 자료 4쪽 안건 제1항입니다.
- 첫 번째 안건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결정 건입니다.
-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기준을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얼마큼 인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 법령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의정활동비 결정 시 서대문구의 재정 능력과 의정활동 실적, 25개 자치구 의정비 현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바 관련 자료를 6쪽부터 15쪽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 먼저 6쪽입니다.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로 우리구는 2018년 16위, 2023년 14위입니다.
- 7쪽 의원 1인당 자치법규 발의 건수는 16.3건으로 자치구 3위입니다.
- 다음 8쪽 자치구 의회 회기 일수는 연평균 104.4일로 전체 4위입니다.
- 그다음에 9쪽 넘어가겠습니다.
-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현황은 총 8개 단체로 전체 1위입니다.
- 10쪽 자치구별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만여 명으로 18위입니다.
- 그다음에 11쪽 2023년도 서울시 자치구 운영비는 4,648만 원으로 15위입니다.
- 12쪽 구의회 우수 사례입니다.
- 청소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의사일정을 수립하여 실제로 구의회 처럼 조례 발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는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2개 자치구입니다.
-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은 서대문구를 포함해 3개의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4쪽 타구 의정비 등 현황입니다.
- 의정활동비는 20개 구가 150만원으로 잠정 1차 회의에서 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의견 수렴은 20개 구가 공청회 1개 자치구가 여론조사로 결정되었습니다.
-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O 위원장〉

- 대외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배부된 심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서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인상 금액 등 질문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손을 들고 호명을 하신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견을 내기엔 너무 시간이 없었나요?
-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면 대외협력팀장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000 위원>

- 000 위원입니다.
-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잠정 금액으로 내봤는데 이게 다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 금액이라는 얘기신 거죠?

<대외협력팀장>

- 저희 같이 1차 회의를 끝내서 잠정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공청회에서 이 금액이 맞냐 높냐 낮냐 이걸 찬반을 나눠서 토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금액 범위를 설정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2차 회의 때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잠정 금액은 1차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0 위원>

- 저기 공청회 일자가 잡혀 있는 건데 저희도 그러면 만약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공청회 일자를 잡으면 언제 정도 잡히는 건가요?

<대외협력팀장>

- 보통 이제 2주 이상 행정절차법상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 예정은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2월 말 정도 예정은 하고 있고요.
-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2차 회의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일자를 일정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만약에 공청회가 된다면 위원장님의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 그다음에 2차 회의는 전체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일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장>

- 참고로 회의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공청회 개최를 한다면 2월 26일부터 28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 그렇게 되면 저희 회의는 그다음 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월정수당은 변함이 없나요?

<대외협력팀장>

- 월정수당은 작년(2022년)에 이미 4개년도에 대해서 이미 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다 정했고 지금 첫 해에만 3% 인상이 됐고요.
- 그다음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똑같이 2026년까지 그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변동이 없고

<000 위원>

- 그러면 이제 의정활동비가 만약에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게 이번에는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외협력팀장>

- 지금 저희가 올해 인상률이 2.5%였고요. 작년에 1.7% 정도 됐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됩니까? 월정수당은 2.5%가 인상이 된다는 소리네요.

<대외협력팀장>

- 작년도 거를 올해 반영하기 때문에 1.7%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의정활동비 인상금이 되네요.

<000 위원>

- 위원장님

<000 위원장>

○ 네 말씀해 주세요.

<000 위원>

- 의원들의 활동은 자치법규 발의 건수 회기일수 또 연구단체 현황 이런 게 주로 모니터가 되는 거죠.
-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에도 외견상 보여지는 지표는 서울시내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여지거든요.
- 그리고 또 서대문구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도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구 20개 구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진 것 같아요.
- 그래서 다 동일하거든요. 저는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000 위원장>

- 000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최대 한도 금액인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사실 거의 뭐 다른 모든 구가 150만 원 해 놓으니까 이걸을 내기가 참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서대문구가 구의원 1인당 주민 수가 2만 415명으로 18위예요.
-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서대문구가 몇이죠?
재정자립도가 어디 있죠?
- 재정자립도가 14위고 이런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치거든요.
- 근데 뭐 우리보다 낮은 모든 구들 포함해서 다 150만원 내놨으니 이런 이걸을 내기가 상당히 좀 그렇네요.
-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000 위원>

- 이게 지금 지급 금액이 아니고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대외협력팀장〉

- 지금 다 공청회로 이렇게 하는 구들은 150만 원으로 잠정 지급하겠다 지급 금액을 결정한 거고요.
- 그래서 여기에서 공청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000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정 여건이나 주민들의 지불 의사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재정 여건은 사실은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 25%밖에 안 돼서 재정 자립도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위는 14위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지불 의사 같은 거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금액을 결정 해야 되는 게 좀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 근데 이게 그냥 잠정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상한을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150만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000 위원장〉

- 혹시 추가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000 의원님

〈000 위원〉

-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뒤쳐지거나 이러지 않고 최소한 평균 이상 정도 이상은 하고 계신데 다른 구 지금 잠정 확정된 게 20개 구 이상이 150만원을 거의 지금 의견인데 우리가 그 구에 비해서 더 적게 금액을 책정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움이 좀 있다.

〈000 위원〉

- 글썸요. 바로 바로 그거예요.

〈000 위원〉

-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이거를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걸 따르는 절차가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잠정으로 우리가 저희가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00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 금액은 150만원으로 인상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 의견수렴 방법

〈000 위원장〉

- 다음은 안건 제2항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대외협력팀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 두 번째 안건인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 건입니다.
- 회의 자료 16쪽 17쪽입니다.
-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임의로 생략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있으며 이 중에 한 가지 방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공청회 선택 시에는 기준 금액 범위와 개최 일시를 결정해야 하며, 여론조사 선택 시에는 기준 금액 범위와 최소 금액 용역업체 선정을 추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 공청회와 여론조사 의견 수렴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회 위원장이 공청회 주재자로 지정이 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발표자 신청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 공청회 당일에는 1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금액에 대하여 발표자들이 나와 찬반 의견을 발표하고 발표자 간 상호 간 질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 발표 이후 참석한 방청인의 의견도 청취하여 의정활동비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청회는 사전 공고를 포함하여 최소 1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발표자 수당 및 속기록 작성, 회의 자료 준비 등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 그리고 공청회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의정활동비에 대해 깊게 토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론조사에 비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전화를 통해 직접 조사하는 CATI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업체선정 계약체결 및 여론조사 결과도출까지 21일 이상 소요되며 예산은 용역비로 700~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기준 금액에 대해 주민들이 적정하다 낮다 높다를 결정한 후 적정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의견 수렴의 편의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이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의정활동비에 대해 깊게 숙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건 논의 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19쪽에서 23쪽까지 공청회

개최안과 24쪽부터 26쪽까지 여론조사 안을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안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00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배부된 심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질문 및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000 위원님

<000 위원>

○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금액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민들 지불 의사인데 그거를 알려면 저는 여론조사가 가장 적합한 방식, 그거를 알아내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장>

○ 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로 아까 비교 자료에 보니까 00를 제외한 다른 구는 다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된 걸 확인했습니다.

○ 네 000 위원님

<000 위원>

○ 한도까지 150만 원 올려서 시의원 구의원이죠.

구의원 15분 40만 원 인상, 1년 추가 비용이 7,200만 원이죠

<대외협력팀장>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7,200만 원인데 이게 주민 여론이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 1년에 7,200만 원 소요되는 이 안전에 대해서 뭐 7억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는데 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회계상의 중요도 원칙에 비취 볼 때 이게 이런 중요한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여론조사가 주민들의 지불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 1년 추가 예산이 7,200만 원인데 거기에 10%를 들여서 예를 들어 추가 예산이 7억 2천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8천만 원이 될 텐데요.
-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적은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라 보지만 구청 1년 예산에 비추어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청회로 다른 구처럼 하는 것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의원님

〈000 위원〉

- 근데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료를 이런 자료를 다 제공할 것 아닙니까?
- 그 자리에는 그러면 딱 데도 이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소위 말해 객관성이 떨어져버려요.
- 오히려 여론조사를 하면 그저 객관적인 주민들의 여론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왜냐하면 우리도 보세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뭐 150만원 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는 분위기가 돼버린단 말이죠.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듣는 데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비용은 조금 들지만 그런 주민들의 아주 객관적인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좀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저는 우리 000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론조사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000 위원장〉

○ 네 말씀 주세요.

〈000 위원〉

- 위원님께서 비용 편익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이제 추가 비용 그러니까 공청회 대비 여론조사 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 그리고 이게 1년으로 따지면 7,200만 원이지만 이게 계속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1년 치 대비 이렇게 비용으로 계산하는 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000 위원장〉

- 네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여론조사하는 경우에 여기 여론조사 안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 그러면 사람 일반 주민들은 의정 활동비만 알고 실제로 의원들이 얼마 받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질문 사항에 추가를 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110만원만 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외협력팀장〉

- 근데 이 내용에는 거기 추가로 반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 그 내용 이거는 이제 예시 안이고요. 추가로 만약에 그 내용을 삽입하고 싶다면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000 위원〉

- 어차피 주민 의사를 반영할 거면 그런 것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장〉

- 혹시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으시면 의견이 사실은 약간 분분한 상황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000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00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공청회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거수를 통해서 의견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여론조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2(두) 분입니다.
- 그다음에 공청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 6(여섯) 분이 공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의견들을 정리를 해보면 공청회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은 공청회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추가 논의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한 번 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청회 및 2차회의 일정

〈000 위원장〉

- 속개를 선포합니다.
- 우리 회의자료 18페이지 보시면 공청회 개최 가능한 일자가 3개 나와 있습니다.
- 혹시 언제가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니까.

〈000 위원장〉

- 네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2월 26일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000 위원장〉

- 네 그럼 2월 2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9시부터 12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확정해야 되나요?

〈대외협력팀장〉

- 보통 이제 하게 되면 10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000 위원장〉

- 그렇다면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차 회의 개최 일시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3월달 4일부터 8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 2차 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0 위원〉

- 위원장님이 가능하신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가능한지 묻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장>

- 저는 이 주간에 다 가능합니다.
- 혹시 오후가 불편하시면 3월 5일 6일 8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오전이 불편하시면 3월 4일 오후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3월 4일 오후가 좋습니다.

<000 위원장>

- 3월 4일로 지금 1차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 어떠신지 한번 봐주세요.

<000 위원>

- 저는 3월 6일 오전만 가능합니다.

<000 위원>

-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000 위원>

- 혹시 ○○○위원님 6일 일정을 아예 바꾸실 수 없는 건가요?

<000 위원>

-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차 회의 개최 일시는 2024년 3월 6일 10시에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 마무리

<000 위원장>

-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금일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15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